

의안번호	2211571
의 퇴 인	박용갑의원
회 답 일	2025.8.11.
추 계 번호	25D3608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의2제3항 (모범운전자연합회) 신설	국가는 모범운전자연합회의 교통경찰 보조업무 수행, 교육·훈련 및 안전장비 지원 등을 도로교통 관련 과태료 및 범칙금 등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2	안 제5조의3제2항부터 제4항(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) 신설	국가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 수행 중 질병, 부상, 사망이 발생한 경우, 치료를 실시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	의무규정
3	안 제5조의3제6항 (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) 신설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국유·공유 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무상(無償)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5조의2제3항(모범운전자연합회) 신설	• 미대상: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운전자에 대한 예산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추가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
2	안 제5조의3제2항부터 제4항(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) 신설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3	안 제5조의3제6항(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) 신설	

2. 상세 사유

□ 모범운전자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(안 제5조의3제2항부터 제4항 신설)

- 개정안은 모범운전자의 활동 중 발생한 질병, 부상, 사망에 대하여 치료를 실시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
 - 경찰청에 따르면, 모범운전자의 재해보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종합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보험료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보조하고 있으나, 모범운전자의 일부만 보험에 가입하고 있음
 - 따라서 개정안으로 인하여 가입건수가 증가하고 보상의 범위 및 내용 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추가재정소요 예상
- 다만, 개정안에 따라 증가하는 보험가입 건수, 1인당 보험료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
 - 참고로,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는 1개의 중앙본부와 18개 시·도지부 261개 지회로 구성되어 있고 2025년 8월 현재 23,276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음

□ 국유 및 공유 재산의 무상 사용(안 제5조의3제6항 신설)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국유 및 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, 국유 및 공유 재산의 사용료 수입이 감소하는 등 재정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
 - 국유 및 공유재산의 유형은 토지, 건물, 기계·기구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대부 및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음
 -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모범운전자연합회에 국유 및 공유재산인 건물 등의 무상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재정수입의 감소 예상
- 다만, 모범운전자연합회가 무상으로 사용할 국유 및 공유재산의 종류 및 수량, 해당 국유 및 공유재산의 평균 사용료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
 - 참고로, 국유재산 규모는 2023년 말 기준 1,369조원이고 유형별로는 토지 630조원, 건물 73조원, 기계·기구 3조원임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assembly.go.kr